

세입(수입)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기타재산수입
54 - 545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타재산수입	0.6	1	-	1	-	-	-

1. 법적 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1조 제2항
 -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입 개요

- 민간단체 경상보조비 통장 이자 등
- 세출·세입 외 현금 통장 이자 발생분 및 단수금액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수납액	0.1	0.2	0.6	0.8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10.2	10	-	10	-	-	-

1.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③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 1의3. (생략)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국고금관리법」 제29조(지출금의 반납) ①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②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호봉의 정정) ① 호봉의 확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퇴직 후 재임용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
- 호봉정정 등에 따른 과년도 급여 정산금 환수
- 인권단체 국고보조금 정산금 등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수납액	146.6	13.5	10.2	11.4

기타잡수입
69 - 69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타잡수입	0.6	1	-	1	-	-	-

1. 법적 근거

-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금구매 제도
'17년부터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도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
- 「도서관법」 제33조(사용료 등)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2. 세입 개요

- 공적 항공마일리지 개인 매매대금
- 인권도서관 복사수수료 등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수납액	0.1	0.1	0.6	0.2

세출(지출)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사 업 명
(1) 인건비 (1001-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01	100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인건비	인건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인건비	14,814	17,936	-	18,515	-	579	3.2

4. 사업목적

-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해 공무원에게 봉급(연봉) 및 각종 수당을 지급
- 인건비 소요 : 255명(정원 224명, 전문임기제 7명, 실무수습 2명, 청원경찰 2명, 별도정원 12명, 2020년 증원 정원 8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개별법령에 근거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국가인권위원회 255명(별도정원 등 포함) 인건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매월 인권위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에 따라 인권위 공무원에게 봉급 및 각종수당 지급

사 업 명
(2)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1011-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일반회계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11	200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기본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1,477	1,635	-	1,696	-	61	3.7

4. 사업목적

- 인권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수 인력운영경비 및 기관운영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해당 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부 공통 기준 및 기관 운영 개별소요 반영

사 업 명
(3) 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일반회계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11	250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기본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관운영 본경비	6,642	6,517	-	6,914	-	397	6.1

4. 사업목적

- 인권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수 인력운영경비 및 기관운영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해당 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부 공통 기준 및 기관 운영 개별소요 반영

사 업 명	
(4) 인권의식 증진 (10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0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인권의식 증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인권의식 증진	700	987	-	947	-	△40	△4.1

4. 사업목적

① 인권의식 향상 매체 발간

-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고,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권친화적인 문화조성을 위해, 일반국민에게 웹진 「인권」을 발간·제공하고, 웹접근이 어려운 다수인보호시설(노인요양시설, 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병원, 작은 도서관 등에 인쇄본 격월간 잡지 「인권」 배포

② 매체 등을 활용한 인권홍보

- 대중들의 인권감수성 확대를 위해 언론·뉴미디어(페이스북, 유튜브 등)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인권 관련 정책과 내용을 알려, 인권과 위원회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 제고

③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홍보

- 위원회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국가기관임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위원회의 결정례를 이해하기 쉬운 영상으로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배포

④ 인권문화콘텐츠 개발·보급

- 인권을 주제로 한 웹드라마 제작·보급, 기 제작한 인권영화 DVD 제작·보급, 인식개선 콘텐츠 개발·보급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

⑤ 인권작품 공모

- 일상생활 속 인권 이슈에 대한 관심 환기와 인권이 생활 영역 곳곳에서 지켜져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생성과 발굴을 위해 청소년·일반시민들에게 공모전 참여 기회 제공

⑥ 인권의 날 행사

- 인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 인권상 수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5호(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제1항(인권교육과 홍보)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03. 8. 1. 월간 “인권” 발간, 매호 31,000부 발간
- 2004. 5. 인권잡지 웹진 제작 및 홈페이지 탑재, 시각장애인용 목·점자 인권잡지 발간
- 2007. 예산 감소로 격월간으로 변경, 매호 22,000부 발간

- 2016. 예산 감소로 웹진 중심 운영, 매호 3,500부 발간

- 2006년 이후 차별시정기구 일원화에 따라 고용상의 차별(장애, 나이, 성, 학력 등) 주요 차별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문화콘텐츠 보급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콘텐츠 개발

- 2018년 대중에게 친근한 웹드라마 제작 및 보급을 통해 우수 콘텐츠 제공, 인권의식 제고 효과 기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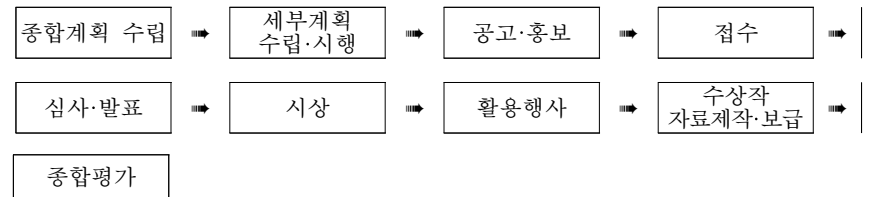
○ 인권잡지 발간

인쇄, 디자인, 웹진, 발송 용역 업체 선정 ⇒ 격월간지 기획회의 ⇒ 원고 청탁 및 취재 ⇒ 편집 및 디자인 작업(교정 등) ⇒ 인쇄 및 제본 ⇒ 격월간지 및 웹진 발간 ⇒ 배포 ⇒ 시각장애인용 매체 발간

○ 매체활용 홍보강화



○ 인권작품 공모



사 업 명

(5) 지역인권문화 확산 (103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3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지역인권문화 확산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지역인권문화 확산	420	334	-	468	-	134	40.1

4. 사업목적

① 인권체험관 운영

- 지역민의 인권의식 신장을 위해 다양한 인권 주제의 예술작품 기획 전시 및 시민, 학생 등에게 인권체험 제공

② 주민 참여형 인권문화 확산

- 지역민의 위원회 및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

는 온·오프라인(언론, 블로그, SNS 및 프로야구 시구행사, 지역 축제 등을 활용한 홍보)사업 진행

③ 인권문화조성 네트워크 운영

- 지역 내 인권 시민 사회단체 및 기관과의 상시적이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주요 인권의제를 공동 발굴하고 대응 방안 모색
-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인권 선언의 의미와 가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토론회, 간담회, 캠페인 등 개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제5호 및 제8호
- 동법 제26조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08. 10. 광주인권체험관 개관
- 2009. 시민 참여형 인권홍보 추진, 이주민 차별인식 캠페인 추진
- 2010. 4. 부산인권체험관 개관, 권역별 상담네트워크 운영 추진
- 2013. 7. 대구인권체험관 개관
- 2015. 인권옹호자 협력프로그램 운영
- 2016. 6. 대전인권체험관 개관
- 2019. 2. 강원인권체험관 개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6)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03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1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인권교육 활성화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응자	국고보조율(%)	응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104	1,236	-	1,825	-	589	47.7

4. 사업목적

① 인권 연수과정 운영

-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학교·공공·시민영역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권강사 양성

②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

-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근의 기술적 변화를 반영

하여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강

- 사회 각 분야의 인권감수성 증진 및 역량강화를 위해 일반시민(인권 및 시민단체 활동가, 학생 등)과 공무원(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인권교육 실시

③ 인권교육 정책제도 기반 구축

- 교육기관별, 분야별, 대상별 인권교육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교육 내실화와 체계화를 위한 법제도, 관행 개선 권고

-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역할과 기능을 명시한 인권교육 법제화, 제도화 등 기반조성 사업 지속적 추진

④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국가기관·지자체 등 관계부처 및 NGO, 학교, 전문가, 해외 인권교육 전문기관 등과 협의체제 구축 및 협력사업 시행

⑤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 다양한 인권교육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상·내용·수준별(공공·학교·시민영역)의 활용성이 높은 형태의 인권교재, 외국 우수 인권교재 등) 교육자료 개발

⑥ 직원 역량강화 교육

-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업무 영역별, 대상별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 전문 역량강화

⑦ 인권도서관 운영

- 인권정보 접근의 지역 간 균형을 통한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인권도서관 서비스 및 장서 이용 확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및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 유엔 7대 협약의 인권교육 권고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 유엔의 인권교육 선언과 관련 행동계획

세계인권선언 제26조

·교육은 인격을 온전하게 발달시키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더욱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방향을 맞춰야 한다. (...)

비엔나선언 및

·국가들은 세계인권선언, A규약에 규정되어 있듯이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

<p>행동계획 제33조</p>	<p>유의 존중을 강화하는 목적이 되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동 선언은 교육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킨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요청한다. (...)</p>
<p>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1995-2004) 행동계획 제10조</p>	<p>·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의 목표는 다음을 포함한다. (a) 모든 단계의 학교(...)에서 인권교육의 증진을 위한 (...) 전략의 수립 (b)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및 지방 차원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 (...) 수립 (c) 인권교육을 위한 자료의 공동 개발 (d) 인권교육 증진에 있어서 대중매체의 역할 및 역량 강화 (e) 가능한 한 많은 언어에 의한 (...) 세계인권선언의 국제적 보급</p>
<p>제1차 세계인권 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05-2009)</p>	<p>·초중등 학교에서 인권교육과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조하여 학교 제도 내에 인권교육의 도입과 실천 증진에 초점을 둠 ·인권교육은 교육에 대해 권리에 기초한 접근(rights-based approach) 증진(제17조)</p>
<p>제2차 행동계획 (2010-2014)</p>	<p>·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및 공무원, 법집행관, 전 계급의 군인을 위한 인권훈련 프로그램에 중점을 둠</p>
<p>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2011.12.19.)</p>	<p>·인권교육에 대한 권리성 및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교육의 필수성 강조(제1조)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조(제7조~제9조)</p>
<p>제3차 행동계획 (2015-2019)</p>	<p>·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은 제1차와 제2차 행동계획의 이행을 증진하고 언론인과 미디어 전문가대상 인권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음.</p>

② 추진경위

- 2003. 법무부, 경찰청 등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이 정규과목으로 개설되기 시작하였으며 그중에서 가장 활성화된 기관이 경찰공무원 인권교육임.
- 2005. 사이버학습관리시스템(LMS : Learning Management System) 구축
- 2006. 방문프로그램, 인권문화 이벤트 등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프로그램 운영
- 2009.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의무화 실시
- 2010. 연간 연수과정 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교육센터 운영지침」 마련을 통한 인권교육센터 운영의 안정화·활성화 (계속)
- 2010. 인권정책리더(공무원 및 광역·기초의원) 과정 신설
- 2010. Wee Project 상담교사 대상 인권감수성 과정 권역별 실시
- 2012. 인권교육 중장기 행동계획[2013~2022]을 통해 국가기관(입법·사법·행정 포함),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 등 모든 사람에 대한 전 생애 평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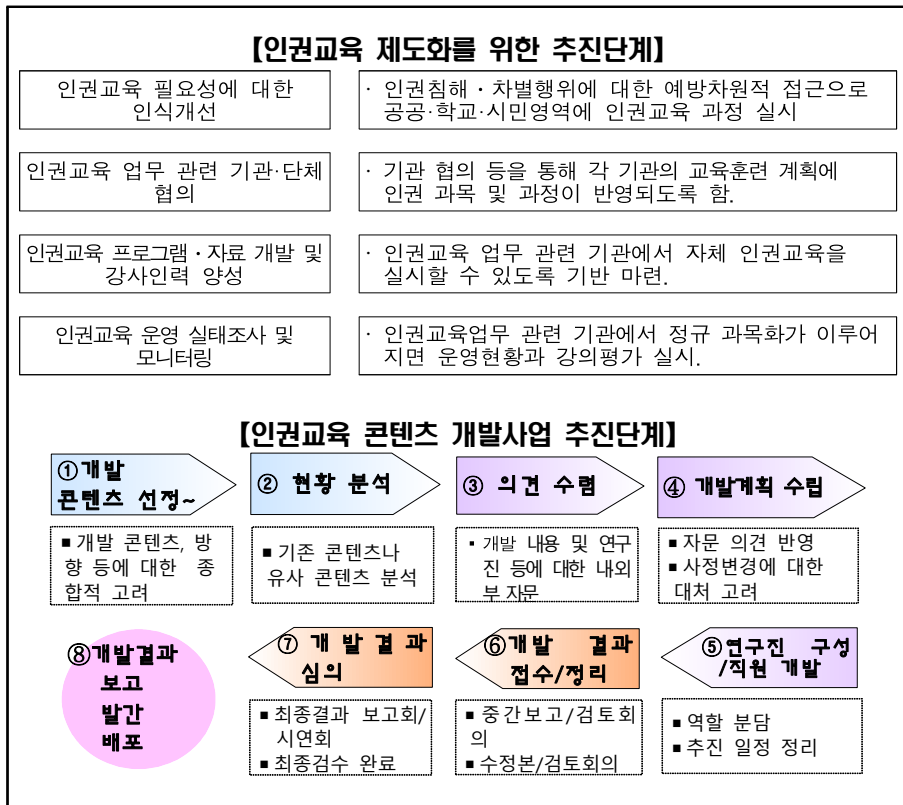
교육을 인권교육의 대상으로 목표 설정

- 2013. 효과적 인권교육 운영을 위한 모바일 및 오프라인교육 관리시스템 개발
- 2014.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한 인권교육 지속 실시 및 다양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한 인권교육 기초 체계 마련
- 2016.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활성화하여 분야별, 대상별 전문 인권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내실 있는 인권교육 수행, 학습관리시스템(LMS) 통합 및 인권교육포털 구축
- 2017. 인권교육 강사에 대한 보수교육 전문화, 인권교육 기본 콘텐츠 개발, 교육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한 인권교육 확장
- 2018. 노동 분야 발굴 등 사회적 인권 수요에 부응하는 인권교육, 인권강사 양성 시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역량강화
- 2019. 노동 분야 발굴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② 인권현장 대응

-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장애인, 한센인, 청소년, 노인 등 방문이나 전화 상담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관련 현장에 찾아가 진정을 접수하는 순회상담과 인권현안 발생 시 현장 상황 모니터링, 관계자 면담 등 실시

③ CTI 전화상담 시스템 등 운영

- 효율적인 전화상담 관리를 위한 시스템(CTI, 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과 장애인 등의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해 화상상담 시스템 운영

④ 민원실 공사

- 민원인 간 충돌 최소화, 아동,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6항제1호(진정사항의 안내 및 상담), 제2호(진정사항의 접수·분류 및 조정), 제3호(진정 외의 민원 처리)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원 운용에 관한 규정」
-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② 추진경위

- 2002. 4. 위원회 사무처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진정접수 안내와 상담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인권전문상담원 제도 운영
- 2003. 1.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권순회상담 시작
- 2007. 1. 상담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상담위원 제도 도입
- 2007. 10. 일용직 신분의 인권전문상담원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 2011. 인권전문상담원(무기계약직) 인건비 예산을 기본경비로 변경 편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8) 취약분야 인권개선 (103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1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취약분야 인권개선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취약분야 인권개선	1,182	1,637	-	1,779	-	142	8.7

4. 사업목적

- ① 인권침해 기획조사
 - 형사절차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주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 보호시설, 노인보호시설, 노숙인 보호시설 등 구급 및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시설 생활인의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인권

상황 개선

- ② 이주인권 및 다문화 사회 인권증진
 - 이주민들의 인권침해 예방 및 건강권, 노동권, 교육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주 인권정책 추진
 -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이주분야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강화 및 국내외 협력을 통한 이주인권 증진 도모
- ③ 차별시정 기획조사
 - 차별 관련 현안 대응 및 기획조사를 통해 차별적 제도와 관행 인식을 개선하고, 각 차별사유와 영역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차별 상황 개선
- ④ 여성인권 증진
 - 여성인권 관련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 등 성차별 해소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보완점을 검토하고 피해자 권리 구제
- ⑤ 노인인권 증진
 - 노동가동 연령 상황에 따른 정년연장, 노령연금 지급시기 조정, 노인복지 사각지대 등 관련 인권문제를 검토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인권보호체계 강화
- ⑥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
 - 군과 관련된 인권전문가 그룹체계를 운영하고, 군인권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군인의 인권 보호
- ⑦ 아동인권 증진
 - 아동인권 모니터링,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 아동인권 관련 정책 검토, 아동인권 관련 실태조사 등을 통해 아동인권 보호 및 증진
- ⑧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 경찰서 내 인권위가 위촉한 상담위원을 배치하여 상담 및 진정접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권구제의 현장성과 신속성 제고
- ⑨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운영
 -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조사 결과를 사회 각계로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동시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상담 창구 운영
- ⑩ 혐오차별 개선
 - 혐오표현 및 차별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관련 실태조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 인권상황 개선
- ⑪ 조사활동 지원
 -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 조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 활동비 지급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인권 관련 법령 제도 개선 권고), 제2호(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제4호(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제30조제3항(직권조사), 제36조제3호(실지조사)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② 추진경위

- 2007.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방문조사 예산 신설
- 2008. 여성, 이주민, 스포츠 선수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인권개선 사업 추가
- 2010. 노인인권 증진사업 추가
- 2012. 군인인권 증진사업 추가
- 2015. 아동인권 증진사업 추가, 사업명 변경(군인 인권교육→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
- 2019.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사업 신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및 혐오차별 개선 사업비를 '20년 예산안에 반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근거	추진절차
	제3항,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제38조	제3항,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제38조
정책관계자 협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제2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간담회 등을 개최

구분	근거	추진절차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4호,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상임위원회)	사업계획→상임위원회 심의·의결→사업자 선정 및 용역계약→실태조사(위원회의 협력)→용역결과보고서
방문조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제38조	조사계획→소위원회 심의·의결→방문조사→방문조사결과보고서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사 업 명

(9) 장애인 인권증진 (1033-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2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장애인 인권증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장애인 인권증진	484	648	-	648	-	-	-

4. 사업목적

①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예방

-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되면서 위원회는 본격적인 장애차별시정기구로서 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 임무 수행

②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및 협력체계 구축

- 장애인 인권증진 유관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인권 현안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제도 개선 도모

③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차별·편견 해소

- 정신장애인 차별·편견 해소를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와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제도 개선 도모
- 정신건강 증진시설을 비롯한 장애인복지시설 내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인권 침해 예방 및 모니터링 실시
-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마련

④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

- 국제사회 및 장애인단체 활동 상황 파악, 전문가 간담회 및 국제회의의 참석 등 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방안 모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8조 내지 제42조

제38조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 제2항

당사국은 자국의 법적, 행정적 체계에 따라 **본 협약의 이행을 증진·보호·감독하기 위해** 당사국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인 기구를 포함한 체계를 유지, 강화, 지명 혹은 설치**해야 한다. 그러한 기구를 설치 또는 지명할 때, 당사국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 및 역할에 관한 원칙들을 고려**해야 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06. 12. 1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의결(유엔총회)
- 2007. 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시행 : 2008. 4., 개정 : 2010, 2014)

- 2007. 11.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사업 착수
- 2008. 12.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회 비준
- 2009. 4. 「정신보건법」 개정,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등 인권교육 의무화
- 2009. 7.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발표(10. 26.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책 개선 권고)
- 2009. 4.~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당한 편의제공 단계적 의무 이행기관 점진적 확대
 - 2014. 10. 3.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발표
 - 2016. 9. 29. 「정신보건법」 제24조 강제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2017. 5. 30.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 정책·제도개선 현안 발굴(실태조사, 진정사건, 전문가 자문 등)→수행 과제 선정→보고서 작성 및 의결→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정책·제도 개선

사 업 명
(10)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034-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4	301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인권제도 선진화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552	1,184	-	1,215	-	31	2.6

4. 사업목적

- ①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이행 점검,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 모니터링 및 자문
 - 국제인권기준의 실효적 국내이행을 위한 방안 모색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에 대한 관계부처, 시민사회의 인식 제고 및 협력

증대

② 인권정책 개발 및 연구역량 강화

- 전문가 자문 및 관련기관 협의,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인권관련 정책과제 개발과 관련 법령·제도·정책 개선 검토
- 지역사회 인권제도화 지원,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협력 등을 통해 지역의 인권제도 확산·구축
- 관련 법령 재정비 등 기본권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③ 정보인권보호 제도 개선

- 정보인권 관련 법률·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등 정보인권 증진
- 4차 산업혁명 등 디지털 환경이 더욱 다양화하고 침해화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정책과제 개발, 실태조사 등 사업을 통하여 사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정보인권 보호 및 증진 체계 달성

④ 기업인권 정책 개발

- 기업의 인권경영 법·제도 기반조성을 위하여 인권경영포럼 개최 등을 통하여 기업의 인권경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

⑤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 대한민국의 현재 인권 상황을 통계적으로 진단·평가하여 국가 인권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4호, 제7호 및 제21조
-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권고(2001. 5. 21.)
- UN의 UPR 제도 도입(2007)

② 추진경위

- 국가인권기구의 기본 기능으로 2002년 이후 지속 추진
- 2006. 2. 제1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권고
- 2008. UN 인권이사회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12. 4. 인권기본조례 245개 지방자치단체 제·개정 권고
- 2013. 1. 노숙인 인권상황 관련 정책개선 권고
- 2013. 1. 노인 인권상황 개선 정책개선 권고
- 2013. 3. 학교 비정규직 처우 향상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 2013. 10.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2013. 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 권고
- 2014. 2.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관련 규정개선 권고
- 2014. 5.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
- 2014. 9.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천, 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권고
- 2014. 11.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
- 2015. 3.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도입 관련 바이오 정보 수집에 대한 의견표명
- 2015. 5.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한 의견표명
- 2016. 2.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천·확산을 위한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 권고
- 2016. 6.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 활용 권고
- 2016. 7. 소방공무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증진을 위한 권고
- 2016. 7.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기업과 인권 NAP) 수립 권고
- 2016. 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2016. 11.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권고
- 2016. 11. 2016헌마388 헌법소원 사건(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한 의견제출
- 2016. 11.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제출
- 2016. 12.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요양병원 제도 개선 권고
- 2016. 12.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2017.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 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
- 2017. 6.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2017. 6.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 2017. 8. 특정직업군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 2017. 8.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개선 권고
- 2017. 11. 대학 장학금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개선 권고
- 2017. 11. 초단시간근로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
- 2017. 12.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의견표명 및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고
- 2017. 12. 제품사고 예방 및 안전성 확보 제도개선 권고의 건
- 2017. 12.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

- 2018. 2. 경제협력개발기(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개선 권고
- 2018. 5.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의 건
- 2018. 7. 진폐근로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2018. 7. 생식건강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2018. 7.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2018. 8.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국가유공자 심사 대상 포함 등을 위한 의견 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
- 2018. 8.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 2018. 11. 가축 살처분 매물 작업 참여자 심리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2018. 12.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제도 개선 권고
- 2019. 2.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
- 2019. 4. 농어촌 지역 노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2019. 6. 대규모 점포 등에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권고
- 2019. 8.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권고
- 2019. 8.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2019. 9.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2019. 9. 실업위험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 의견표명
- 2019. 11. 비적정 주거 거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2019. 12. 노인자살률 감소를 위한 노인정신건강 제도개선 권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 연간업무계획에 의한 중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포럼, 심포지엄 개최, 정책 과제 발굴 →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이해당사자 등 전문가 간담회 또는 토론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 정책과제 선정 및 연구 →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등
-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 계획 및 연구용역과제(주제) 선정 → 연구용역사업 공개입찰 → 심사 및 사업자 선정 → 중간점검 및 보고 → 최종결과 보고서 접수 →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필요 시)
-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사업 계획 수립 → 연구용역사업 공개입찰 → 심사 및 사업자 선정 → 중간점검 및 보고 → 최종결과 보고서 접수 → 결과 발표회(필요 시) ※ 통계청 '국가인권실태조사' 통계대행 별도 실시

사 업 명

(11) 북한인권 개선 (1034-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4	303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인권제도 선진화	북한인권 개선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북한인권 개선	139	153	-	223	-	70	45.8

4. 사업목적

① 북한인권 정책개발

-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물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정책개발 및 대안 마련
- 북한인권 문제 및 해법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시각 차이 극복을 위한 논의를 활성화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사회적 동력 확보

② 북한인권 국제네트워크 기반 조성

-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 북한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인권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유엔차원의 조사위를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당사국인 우리나라 역시 대응이 필요
-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후 제3국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하고, 중국, 태국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파악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 및 협력 필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항

② 추진경위

- 2003. 4. 임시국회 법사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연구사업 부제에 대한 비판 및 사업의 필요성 제기
- 2003. 4. 28. 국가인권위원회 제40차 전원위원회에서 위원회 내 비상설 조직인 '북한인권연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
- 2003. 11. 예결위에서 북한인권관련 2005년도 예산 1억5천만원을 최종 결정
- 2006. 12. 11.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표명' 공포
- 2007. 북한이탈주민 인권관련 및 재외탈북자 현황 파악, 국제심포지엄 개최
- 2008. 국제심포지엄 개최, 북한인권포럼 운영, 국외 현지 조사
 - ※ 2008년 국정과제 선정 :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 2009. 북한이탈 여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북한 정치범 관련 실태조사 등
- 2010. 북한인권법 제정 권고(4월), 재촉구 의견표명(12월)
- 2014.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권고(3월), 재촉구 의견표명(12월)
- 2017.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증진 제도개선 권고(4월)
- 2018. 북한인권법 이행상황 점검 토론회(3월), 북한인권포럼 운영
- 2018.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2019. 국제심포지엄 개최(6월, 11월), 북한인권포럼 운영
- 2019. 북한인권 토론회 및 간담회
 - 유엔 국가별인권상황 정례검토(UPR) 북한보고서 심의 모니터링(5월), 제74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모니터링(12월)

·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재구성(1월), 북한인권특별위원회 회의(5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업무 협의 → 국내외 실태조사 → 전문가 및 관련단체 자문 → 사안별 권고 및 입장 표명

사 업 명
(12) 국제교류협력 (1036-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6	300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국제교류 협력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국제교류협력	1,103	1,312	-	1,295	-	△17	△1.3

4. 사업목적

① 국제회의 참석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의 권고로 설립된 준국제기구로서 유엔 등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소개 및 국내 인권상황과 우수사례를 해외에 공유

② 외국 국가인권기구 협력 워크숍

-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을 비롯한 국가인권기구 간 교류를 활성화 하고 주요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하여 외국 국가인권기구 직원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연수과정 운영

③ 인권현안 국제협력

- 인권의 보편성으로 인해 각 국이 유사한 인권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동대응 및 상황 개선을 위하여 콘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국제협력 증진

④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운영

-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선 제적 대응을 위하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내 고령화 실무그룹을 주도적으로 운영(2016년 이래 우리나라가 의장국 역할 수행, 2022년까지)

⑤ APF 활동 지원

-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내 25개 회원 국가인권기구의 공식적인 연합체임. APF는 호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연례적인 회의,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도 회원으로서 국제부담금 지급을 통하여 APF의 운영을 지원

⑥ 국제인권조약 심의 대응 등

- UPR, 인권조약기구의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 전략 수립, 미가입 인권협약에 대한 가입 촉구 등을 통해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강화

⑦ ASEM 글로벌 에이징센터 운영

- ASEM Global Ageing Center는 우리나라가 아셈정상회의에 제안하여 2018. 1. 설립된 국제기구로 아셈 회원국의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음. 우리 위원회는 주도국의 주무부서로서 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⑧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소개

- 국제인권규범 자료, 특별절차 보고서 등 수집·번역, 국내 소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5호, 제7호, 제9호 및 제21조
- APF 정관 제3조 제1항 b호(국가인권기구 및 기타 인권관련 기구, 단체 간 협력과 공조 활동 증진)

-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권한과 책임) 3(e)조: “국가인권기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유엔, 유엔관련 기구 그리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그 책무로 하는 외국 국가인권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 UN 인권이사회 설립결의안(2006. 3. 15. A/RES/60/251) 5(h): 인권이사회는 인권 영역에서 정부·지역기구·국가인권기구·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

② 추진경위

- 2002. APF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국가인권기구 국제 연합체인 ICC(현재 GANHRI로 변경됨), APF 정기회기 참석 등 활동
- 2004. APF 제9차 연례회의 및 제7차 세계인권기구 대회 개최
- 2004. / 2007. APF 의장 수입국 수행
- 2005. / 2008. APF 부의장 수입
- 2007. ~ 2009. ICC 부의장 수입
- 2007. ~ 2019. 외국 인권기구 초청 연수 실시
- 2006. ~ 2011. ICC 승인소위원회 아태지역 대표 수입
- 2012. ~ 2015. ICC 집행이사회 집행이사국 수입(4년)
- 2015. ASEM 노인인권 국제콘퍼런스(1차)·국가인권기구 특별세션 개최
- 2016. ASEM 노인인권 전문가포럼·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특별세션 개최
- 2016. ~ 2018.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 수입
- 2018. ASEM글로벌에이징센터 설립 지원
- 2017. ~ 2019. ASEM 노인인권 국제콘퍼런스(2·3·4차)·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특별세션 개최
- 2019. 제24차 APF 연례회의 및 격년 콘퍼런스 개최

< APF 활동지원 >

- 2002.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APF 정회원 가입
- 2004. 제9차 APF 연례회의 및 제7차 세계인권기구대회 개최 시 APF로부터 1억원 지원받음
- 2014.~2016. APF 고문방지대사 역임
- ※매년 APF에 1억 원 지원

< GANHRI 활동지원 >

- 2004. ICC A등급 정회원으로 가입
- 2007. 위원회 ICC부의장 수입(2009년까지)
- 2012. 제25차 ICC연례회의 임기3년의 집행이사국으로 선임
- 2016. 제29차 GANHRI연례회의에서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 선임
- 2018. 제31차 GANHRI연례회의에서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 재선임 (~2020)
- 2019. GANHRI 집행이사회 이사국 선임(2020~2023)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세부사업계획 수립 → 초청대상 국가인권기구 및 직원 선정 → 사업 집행 →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사업 평가) ○ APF 지원 지원요청 → 검토 → 지원 → 사후 모니터링(APF 총회 참가 등)
--

사 업 명
(13) 국내교류협력 (1036-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6	303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국내교류협력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국내교류협력	298	309	-	290	-	△19	△6.1

4. 사업목적

①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인권 저변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인권위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인권 과제들을 공모하여 보조사업 단체 선정·지원

② 지방자치단체 및 인권단체 공동협력

- (전국 인권옹호자 회의)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관계자와 지역 인권단체 활동가 등이 매년 한 자리에 모여 인권교육, 인권조례, 인권영향평가, 인권기본계획 등 인권행정업무 전반의 업무경험과 협력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여 인권 행정의 질 제고, 인권행정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와 지역 인권단체의 협력 강화 등을 도모
- (권역별 지방인권기구 협력) 인권 가치의 지역 확산, 인권현안 의제 논의 및 공동대응, 인권조례 확대 및 정착, 지방인권행정의 지원 및 협력 등을 위해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지자체 인권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8호, 제10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② 추진경위

- 시민단체로부터 민·관 공동협력 사업 지원 요청 지속
- 2003. 민간의 인권옹호활동 사업 지원(계속), 41개 단체 신청(23개 지원)
- 2004. 83개 단체 신청, 26개 단체 선정 지원
- 2005. 100개 단체 신청, 33개 단체 선정 지원
- 2006. 73개 단체 신청, 32개 단체 선정 지원
- 2007. 112개 단체 신청, 30개 단체 선정 지원
- 2008. 157개 단체 신청, 32개 단체 선정 지원
- 2009. 132개 단체 신청, 33개 단체 선정 지원
- 2010. 89개 단체 신청, 15개 단체 선정 지원
- 2011. 72개 단체 신청, 16개 단체 선정 지원
- 2012. 56개 단체 신청, 15개 단체 선정 지원
- 2013. 56개 단체 신청, 14개 단체 선정 지원
- 2014. 72개 단체 신청, 15개 단체 선정 지원
- 2015. 40개 단체 신청, 16개 단체 선정 지원
- 2016. 29개 단체 신청, 14개 단체 선정 지원
- 2017. 36개 단체 신청, 10개 단체 선정 지원
- 2018. 34개 단체 신청, 14개 단체 선정 지원
- 2019. 36개 단체 신청, 12개 단체 선정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인권단체 협력사업 수요조사 ⇒ 기본계획 수립 ⇒ 지원사업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응모) ⇒ 사업심사선정(사업심사위원회) ⇒ 선정단체 통보, 실무 교육 ⇒ 보조금 교부(1차) ⇒ 중간 평가 ⇒ 보조금 교부(2차) ⇒ 현지 모니터링 ⇒ 사업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수령 ⇒ 사업비 정산 및 평가

사 업 명

(14)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1037-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7	500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인권위 정보화(정보화)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003	994	-	1,102	-	108	10.9

4. 사업목적

① 인권정보시스템 운영

- 인권정보시스템(HW, SW 및 기반시설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회선 사용료 등의 필수 운영 경비

②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 최신 ICT 기술동향 등을 반영한 인권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③ 인권정보시스템 보강 및 개선

- 노후 장비 교체, 기반시설 보호와 정보보안 강화 등을 위한 시스템 및 SW도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0호,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5조, 「전자정부법」 제7조, 제16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2. 정보화기반 시설 구축 및 전자도서관리시스템 도입
- 2003. 인권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2004. ~ 2005. 사이버인권교육시스템 구축
- 2006.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업무관리시스템 및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 2007. 인권정보포털시스템 구축
- 2008. 인권행정정보시스템 구축
- 2009. 진정처리시스템 고도화, 전산장비 광주통합전산센터 이전
- 2010. 진정통계시스템 구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 사업
- 2011.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구축, LMS 기능개선
- 2012. 내부행정시스템 구축,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 2013. 인권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 수행
- 2014. 차세대 진정처리시스템 구축
- 2015. 차세대 진정통계시스템 구축
- 2016. 인권위 홈페이지 재구축
- 2017. 인권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 2018. 스마트 내부행정시스템 구축
- 2019. 인권정책 진정처리시스템 구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일상감사 요청
⇒	사업계획(안) 보고(사무총장, 위원장)
⇒	사업추진 (조달청 계약의뢰⇒사업자선정⇒사업수행⇒검사 및 완료)
⇒	결과보고 및 평가

사 업 명
(15) e-진정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1037-5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7	501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인권위 정보화(정보화)	e-진정 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e-진정시스템 구축 운영	-	1,625	-	692	-	△933	△57.4

4. 사업목적

- ① e-진정시스템 운영
 - e-진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한 경비
- ② e-진정시스템 구축
 - e-진정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로 진정접수 등 현장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현장업무시스템 구축

③ e-진정시스템 보강 및 개선

- 인권현장에서 민원/진정 접수 등으로 실시간 서비스가 증가됨에 따라 시스템 기능 개선 필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0호,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5조, 「전자정부법」 제7조, 제8조, 제16조

② 추진경위

- 2018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진정사건 대국민 알림서비스의 부재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 요청
- 이에 대한 관련 시스템 및 관계기관의 협조로 시스템 구축 개선방안 모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